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직원(사무국장) 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인사위원장

---

1. 최종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2025-재단-01

##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원본 제출)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자체서식)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3.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 일 시 : 2025. 5. 19.(월) ~ 5. 22.(목)
- 장 소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실

### 4. 응시자 제출 서류 반환

- 대 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자
- 기 간 : 2025. 5. 26.(월) 부터 180일 간
- 청구방법 :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및 반환 청구
  - 이메일 제출(ghwf3737@naver.com)
- 절 차 : 청구서 접수 후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유의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비용은 응시자(반환을 원하는 자)가 부담함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5. 기타사항

- 합격자 등록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 기재, 사실관계 서면입증 불가, 증빙자료 제출 지연, 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가 확인 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